

한강 이야기 여행 코스

□ 16개 코스 : 도보코스 14개, 선상코스 1개, 야경코스 1개

분류	코스명	주제	만남의 장소	주요 이동 경로
도보	1코스	광나루길	경강의 시작.전쟁 5/8호선 천호역 원형광장	하남위례성 - 도미부인 동상 서거정 광진예찬 시비 - 광진교 8번가 - 한강호텔 - 5호선 광나루역
	2코스	송파나루길	도시의 형성.발전 2호선 잠실역 3번 출구	삼전도비 - 석촌호수 - 송파나루비(표지석) - 석촌동 고분군 - 9호선 석촌고분역
	3코스	뚝섬나루길	조선건국과 목재집결 2호선 한양대역 4번 출구	전관원 - 마조단 - 한양대박물관 - 살곶이다리 - 중랑천 - 공씨책방 - 뚝섬 기동차길 - 뚝섬갈비골목 - 2호선 뚝섬역
	4코스	노들나루길	충효사상과 다리건설 9호선 흑석역 1번 출구	효사정 - 학도의용군 위령탑 - 한강대교 - 주교사 표석 - 용양봉 저정 - 노강서원터 - 사육신 공원 - 한강철교
	5코스	동작진길	명당 동작진의 역사 4/9호선 동작역 3번 출구	동작나루표석 - 국립현충원
	6코스	여의나루길	한강의 기적 9호선 국회의사당 6번 출구	국회의사당 - 여의도한강공원 - 밤섬 - 전통의 숲
	7코스	서강나루길	세곡.어류 운반지 6호선 광흥창역 1번 출구	광흥창 - 공민왕사당 - 밤섬부군당 - 서강나루표석 - 밤섬공원 - 현석나들목
	8코스	양화나루길	외국문화의 유입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 양화진터 - 절두산 순교성지 - 양화나루터 표석
	9코스	선유봉길	선유도의 역사 2/9호선 당산역 4번 출구	공무도하가비 - 선유교 - 양화한강공원
	10코스	공암나루길	한강 설화와 허준 9호선 가양역 1번 출구	공암나루 - 광주바위 - 허가바위 - 허준박물관★
	11코스	겸재정선길	겸재의 한강그림 9호선 양천향교역 1번 출구	양천향교 - 소악루 - 겸재정선미술관★
	12코스	난지꽃섬길	난지도의 어제와 오늘 월드컵경기장 1번 출구	월드컵경기장 - 불광천평화의 공원 - 난지한강공원 - 하늘공원 - 문화비축기지
	13코스	영화 '괴물' 체험길	한강 보전의 중요성 국회의사당 1번 출구	국회의사당 - 서강대교 - 여의도한강공원 - 영화 '괴물' 조형물 - 원효대교
	14코스	반포 달빛 투어	야경과 스카이라인 9호선 신반포역 1번 출구	반포한강공원 - 서래섬 - 서래섬 포토존 - 세빛섬 - 잠수교 - 밤도깨비 야시장
선상	15코스	옛나루터길	한강의 옛 나루터 여의도한강공원 관공선 선착장	반포 - 뚝섬 -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

※ '19년 신규 코스 개발(예정) : 2종 - 중랑천 연계 도보코스, 공연 등 연계한 야경투어 코스

한강 역사탐방 운영 현황

경과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원	640명	1,174명 (45회)	1,499명 (76회)	1,562명 (43회)
특이 사항	- 신규 사업 추진 - 1기 해설사 모집 및 49명 양성교육	- 2기 해설사 모집 및 23명 양성 - 해설 보수교육	찾아가는 역사탐방 추가 운영	'한강이야기' 활용 프로그램 신규 운영
해설사 활동비	자원봉사 실비지급(4시간 8천원)			자원봉사 실비 8,000원 지급

경과	2016년	2017년	2018년
참여 인원	2,393명 (147회)	3,470명 (217회)	4,748명 (288회)
특이 사항	도보코스 '스탬프 투어' 인증제 도입	- 코스 확대 - 기획프로그램 추진	- 코스 확대 - 기획프로그램 추진
해설사 활동비	해설활동 실비지급 (2시간 2만원)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방식	해설활동 실비지급 (2시간 2만원)	해설활동 실비지급 (2시간 2만원)

한강 역사 해설사 운영현황

○ 운영개요 : 18명 해설 활동 중

- '12년 한강변 역사탐방 콘텐츠 개발 → 9개 역사탐방 도보코스 개발
- 스토리텔러 양성 : '12~'13년 한강역사해설 자원봉사자 모집 및 전문교육 → 총 72명의 한강 역사해설 자원봉사자 양성('12년 49명, '13년 23명)

○ 해설사 근무여건 : 강사비 지급, 역사관련 이론교육 및 현장학습 지원

- '12~'15년 : 자원봉사 실비 지급(1회 8천원-4시간)
 - '16~'17년 : 강사비 비급(1회 2만원 - 해설 2시간, 준비 2시간으로 총 4시간 기준)
- ※ 한강 역사 해설사 처우 개선 검토 요망('15년 이윤희 의원 요구사항)

○ 강사비 지급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문화관광해설사(1일 4만원 - 7시간 기준), 유사사례 참조

2018년 사업 추진 실적

(단위: 천원)

사업	프로그램명	소요예산	운영실적
한강 이야기 여행	한강 역사탐방	23,000	13코스, 288회 운영, 4,748명 참여
	한강 야경 투어	15,000	16회 운영, 972명 시민 신청
	전문인력 양성	3,650	46회 교육 695명 참여, 30명의 양성
	신규 코스 개발	2,000	난지 등 3개 코스 개발
이야기 속으로	헬로우 견재정선	15,000	9회 운영, 494명 시민 참여
	어린이 보물 수색대	20,000	19회 운영, 651명 시민 참여
	음악이 있는 아침산책	10,000	10회 운영, 169명 시민 참여
	생태계 명탐정	0	15회 운영, 383명 시민 참여
	함께놀자 한강	21,000	2회 운영, 5,959명 시민 참여
이야기 공간 조성	한강 이야기 축제	57,900	4회 운영, 7,031명 시민참여
	광나루 고무줄 축제	27,900	2회 운영, 3,418명 시민참여
	이촌 텐트극장 빌리지	30,000	2회 운영, 6,613명 시민 참여
	한강 이야기 선발전	10,000	24회 운영, 3,995명 시민 참여
이야기 조형물	괴물 조형물 재정비	8,640	안내판 4개 재정비, 1개 신규 설치
	강서 투금체험공감 제거	4,185	홍물화 된 투금체험공간 제거
	오디오 드라마 복구	6,000	61개 콘텐츠 온·오프라인 복구
	이야기 포토존 재정비	21,000	포토존 3개, 이야기 패널 28개 정비
기타	전문가 자문비 등 기타 경비	2,580	한강 이야기 축제 자문 회의 등
총 계		209,955	446회 28,643명 시민참여

2019년 한강역사해설사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서울시민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강의 문화, 역사, 생활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강역사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지침에서 “한강역사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한강 및 인근 자치구(해당 지역)을 방문한 서울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강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설사 자격) ① 해설사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해설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실시한 해설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자격을 부여받는다.

제4조(역할) ① 해설사는 역사·문화·예술 자연 등 해당 활동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해설사는 관광객의 방문 목적, 관심 분야, 연령 등 다양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벼운 이야기 위주의 여흥적 해설로부터 해당 활동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③ 해설사는 관광정보를 생산·확산시키며, 해당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며, 새로운 관광수료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④ 해설사는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문화재를 비롯해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과 해당 활동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대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 제5조(보수교육)**
- ① 본부장은 선발되었거나 활동중인 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심화된 표현기술 및 해설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론교육 과목과 실습교육, 현장실습으로 구성된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보수교육과정이 해설사의 해설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해설사의 활동경력에 따라 아래 <표>에 근거하여 차등 있게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표> 보수교육과정 경력별 교육시간('19년 기준)

2019년 기본 제공 보수교육시간	해설사 필수 이수 시간
회당 3시간씩 연간 8회(24시간)	회당 3시간씩 연간 3회(9시간)

- ④ 본부장은 장이 인정하는 교육·관광·문화예술기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설사에게 해당교육 이수시간을 보수교육과정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배치) ① 해설사의 근무는 해설코스 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역사해설 신청자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가 근무하는 기본 해설코스는 연간 제작되는 안내자료 및 홍보물의 중요 역사·문화 유적지 및 장소를 필수적으로 경유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설화 등의 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은 장소에 제한없이, 해당 코스 내, 어디든 원하는 장소에서 내용만 교육 가능)

③ 해설사는 활동일 1일 기준으로 해설사 1인당 최소 2시간 이상 해설을 하며, 해설시간 2시간과 이동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의 활동을 1회로 본다.

④ 해설사는 활동영역 확대 차원에서 국·도립공원 서울시내 공원 등 자연·생태자원 및 숲 등을 포함하여 해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내 초·중·고 학생단체의 현장 체험학습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단체의 야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해설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① 해설사의 활동횟수는 '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7회 이상'으로 한다. (2019년 기준, 2019. 3. 1 ~ 11.30까지의 해설활동)

② 해설사는 신청자의 요청 및 협의에 따라 확정된 해설 활동일정 및 코스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③ 해설사는 확정된 해설 활동내용(운영일정 및 코스)에 따라 신청자(사전 예약자)와의 현장 만남에 대한 일정 재확인 및 만남의 장소 등 예정된 활동에 대한 신청자(사전 예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해설사의 세부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설 활동내용 확정된 후, 신청자 사전 관리 및 만남의 장소 안내
2. 한강의 역사·문화·자연·생태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3. 한강의 문화관광 해설활동(년간 최소 7회 이상 활동, 2019년 기준)
4. 해설활동 대시민의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
5. 한강의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6. 한강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봉사활동)

제8조(활동 지원 등) ① 본부장은 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 및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 규정에 따른 해설사 직무 활동비(1회 2만원 실비 지급)
2. 해설에 필요한 활동복(모자, 조끼 등) 제공 등 기타 물품 제공 및 비치
3. 해설에 필요한 활동 물품(기가마이크, 스탬프 등) 등 제공 또는 장기 대여
4. 해설사에 한하여 관내 미술관, 박물관 등의 관광지 입장료 면제
5.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의 활동 여건 지원
6. 그 밖에 본부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② 본부장은 해설사 활동비 지급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설사가 활동일지(활동내역)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설사가 작성한 활동일지의 내용이 일반 단순 안내사항(길안내 등) 기재 등 미흡한 경우
3. 주유비, 간식비 등 제7조에 따른 해설활동 이외의 비용
4. 해설사의 외부보수교육, 워크숍 등의 교육 참여

제9조(휴직 신청 등) ① 본부장은 해설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년도 최소 활동횟수 이상으로 성실히 활동한 해설사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전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해설사가 사전에(붙임7 - 해설사 휴직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설사가 신청가능한 휴직 신청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에서 최대 1년 미만이며 휴직을 신청한 해설사는 휴직기간 내, 공식적인 회의 등의 활동(세미나 또는 필수 보수교육 등)에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③ 휴직을 신청한 해설사는 휴직 신청기간에 따라 최소 활동횟수 제한을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연간 평균 활동기간은 9개월을 기준으로 함)

휴직 신청 기간	연간 최소 활동 횟수	필수 조건
6개월	2회 이상	공식적인 회의 및 교육에 1회 이상 참여
7~8개월	1회 이상	
9~12개월	없음	

※ 휴직 전후 해설 활동 배치를 신청했으나, 미배치 된 경우는 활동 한 것으로 인정

④ 해설사 휴직 신청은 전년도 최소 활동횟수 이상으로 성실히 활동한 해설사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해년도 휴직을 신청한 해설사는 익해년도에 연속으로 휴직을 신청 할 수 없다(예시 - 2019년 신청시, 2020년 신청 불가)

⑤ 해설사의 휴직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질병 등 해설사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이 악화 된 경우
2. 단기 취업 등 노동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기관이나 시설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장기 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6개월 이상 활동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본부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경고, 자격상실 등) ① 본부장은 해설사의 활동계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해설사에 대한 정기적인 활동실적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향후 활동심사에 반영한다.

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설사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붙임6>과 같다.
- ④ 본부장은 제2항 1호 사목 적용시, 유료해설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해설사가 사전에(붙임5 - 해설사 유료해설활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지 아니한다.
- ⑤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강 역사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붙임8>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 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해설사의 활동이 취소된 자는 다시 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규선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격상실 된 시점에서 5년간 지원 할 수 없다
- ⑦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해설사에 대한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즉시 한강 역사해설사 내부에 공지하고 자격상실 된 시점부터 모든 한강역사해설사로서의 모든 자격이 상실된다.

부칙

이 지침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 1. 한강역사해설사 서약서
2. 해설활동 가이드라인
 3. 해설 활동일지
 4. 관광객(수요자)대상 설문조사 양식
 5. 유료해설활동 신고서 양식
 6. 경고 및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
 7. 한강역사해설사 휴직 신청서
 8. 한강역사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

[붙임 1]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한강역사해설사로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아 래 -

1. 나는 한강역사해설을 받고자 하는 서울 시민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나는 한강역사해설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나는 한강역사해설사로서 자질양성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습니다.
4. 나는 활동시간을 엄수하며 성실히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5. 나는 한강역사해설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인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해설활동 가이드라인

- ① 해설시간을 잘 지킨다.
- ② 시작할 때 자신에 관한 소개를 충분히 한다.
- ③ 미소와 웃음으로 분위기를 좋게 한다.
- ④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단조롭지 않도록 변화를 준다.
- ⑤ 적절한 제스처의 사용이나 동의 동감 표시 등을 통해 참가자의 흥미와 집중을 유도한다.
- ⑥ 해설 대상과 적절하고 흥미로운 테마를 선정한다.
- ⑦ 테마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⑧ 해설 내용에 테마가 잘 반영되어야 한다.
- ⑨ 해설 대상지나 대상 유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한다.
- ⑩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를 전개한다.
- ⑪ 해설 내용의 전달을 돕기 위해 독특한 아이디어나 매체를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 ⑫ 참가자의 지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관여를 유도한다

[붙임3]

한강역사탐방 해설 활동일지

※ 한강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활동 결과보고임

활동일		해설사 성명	
참여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총 인원	
신청자명			
탐방코스명		소요시간	
세부코스			
특이사항			

활동내용

--

운영사진(2장 이상)

--	--

한강역사탐방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지

한강역사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되셨기 바랍니다. 2시간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앞으로 더 좋은 한강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강역사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① 신문, 인터넷 기사 등 ② 지인 추천 ③ 관심 있는 분야에서 검색 도중, 발견
④ 기타 ()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대한 바는 무엇인가요?(복수선택 가능)

- ① 한강의 수변경관을 감상하고 한강의 역사, 문화 이해하기
② 가족, 친구, 연인과의 친목도모 및 나들이(데이트)하기
③ 다양한 문화경험 체험하기 ④ 도보운동을 통한 야외 활동하기

▶ 프로그램 운영시간(평균 90분)과 이동거리는 적절한가요?

- ① 매우 길었다 ② 매우 길었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짧았다 ⑤ 많이 짧았다.

▶ 한강역사해설사의 해설 내용의 난이도는 어떠했나요?

- ① 매우 어렵다. ② 조금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쉽다. ⑤ 매우 쉽다.

▶ 프로그램에서 방문한 장소와 해설내용은 유익하고 재미있었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우수하다 ② 우수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 프로그램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내용은 무엇인가요?(복수선택 가능)

- ① 한강 수변경관 감상 ② 해설을 통한 한강 및 서울에 대한 이해도 상승
③ 도보운동을 통한 야외 활동 ④ 기타

▶ 향후 본 프로그램에 재참여하고 싶으신가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향후 신규 코스가 개발된다면 어느 한강공원이 좋을까요?

- ① 난지한강공원 ② 망원한강공원 ③ 이촌한강공원 ④ 뚝섬한강공원 ⑤ 기타

▶ 향후 코스와 접목하여 운영되면 좋을 것 같은 콘텐츠는 무엇인가요?(복수선택 가능)

- ① 테마별 심화 해설(인물별, 시대별 등) ② 공연(음악, 마술 등)
③ 미술·공예(만들기, 그리기 등) ④ 기타()

▶ 성별 ○ 남 ○ 여

▶ 연령대 ○ 20대 ○ 30대 ○ 40~50대 ○ 60대 이상

▶ 직업 ○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 주부 ○ 직장인 ○ 교사
○ 역사 및 문화관광분야(여행사 등) 종사자 기타()

▶ 참여형태 ○ 가족 ○ 친구 ○ 연인 ○ 지인(직장동료 등) ○ 기타

▶ 설문참여자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 ① 서울시 - 한강 북쪽(난지, 망원, 이촌, 뚝섬 인근)
② 서울시 - 한강 남쪽(강서, 여의도, 반포, 잠원, 잠실, 광나루 인근)
③ 경기도 ④ 인천시 ⑤ 기타

▶ 기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5]

유료해설활동 신고서 양식

(제10조 제4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접수자)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설 대상자	성명(대표자)	단체명	인원수(명)
	주소	전화번호	
해설 활동 내용	날짜(연월일)	예상소요시간(시간 분)	
	장소	시작	:
		종료	:
금액(원)	특이사항		

「한강역사해설사 운영지침」 제10조 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지 유료해설 활동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붙임6]

경고 및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관련)

1호	경고 조치 내용
가	관광객과 다투거나 지적 받았을 경우
나	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불친절, 태도불량 등)
다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라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마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바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에 유료로 해설활동을 한 경우
아	보수교육 필수 이수과목 또는 시간을 미이수한 경우
자	관광객 혹은 담당 공무원, 위탁 기관이나 업체의 담당자에게 폭언 또는 위압적 행위 등을 행사하였을 경우
차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해설활동 배치를 요구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차	휴직계 신청 없이 연속 6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타	1년간 7회 미만 활동을 한 경우(2019년 기준)
파	기타 본부장이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호	자격상실 조치 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설사 활동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다	연간 7회 미만으로 해설 활동한 사람(2019년 기준)
라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마	관람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바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사	기타 본부장이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자격상실’의 경우 자격상실 된 시점부터 향후 5년간 한강해설사 교육, 해설활동 등 관련된 모든 활동에 금지함

[붙임 7]

한강역사해설사 휴직 신청서

(제9조 제1항 관련)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활동분야 :
- 사 유 : _____
- 기 간 : 20 ~ 20

상기 본인은 『한강사업본부 한강역사해설사 운영지침』 제9조제 1항에 따라 한강역사해설사로서의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하여 이와 같이 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붙임 8]

한강역사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

(제10조 제5항 관련)

- 성 명 : _____
- 생년월일 : _____
- 주 소 : _____
- 활동분야 : _____
- 사 유 : _____
- 기 간 : 20 ~ 20

상기 본인은 『한강사업본부 한강역사해설사 운영지침』 제10조 제5항에 따라 한강역사해설사로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하여 이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귀하